

예산총칙

2022년도 추가경정 제3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2,652,499,173	79,574,975
일반회계	2,163,151,980	64,894,559
특별회계	489,347,193	14,680,416
공기업특별회계	197,005,230	5,910,157
상수도사업	70,754,656	2,122,640
하수도사업	126,250,574	3,787,517
기타특별회계	292,341,963	8,770,259
공유재산관리	94,723,049	2,841,691
의료급여기금	9,870,530	296,11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4,435	133
교통사업	59,682,669	1,790,480
철도건설사업	59,174,991	1,775,250
폐기물처리시설	2,309,585	69,288
도시재정비촉진	1,345,422	40,363
도시개발	9,789,984	293,700
공공시설등 설치	2,412,550	72,377
문화시설건립	35,216,602	1,056,498
도시재생	14,812,006	444,360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3,000,140	90,00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22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624,601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13,624,601천원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제 7 조 202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